

SKC(주) 지배구조헌장

2023. 6. 20.



전 문

SKC 주식회사(이하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SKC에서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SKC를 선택한 사람들(이하 "구성원")과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회사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키워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이루어진 회사의 전체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분야 등에서 Globalization과 초격차 기술 우위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적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Global ESG 소재 Solution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객의 확장에 맞춰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성장한다.

고객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고,

사회에서 필요한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또한 회사는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회사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SK그룹(지분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멤버사들로 구성) 멤버사들과 상호 공유·협력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호 공유·협력을 통해 회사를 포함한 SK그룹 전체의 생존과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현실화함으로써 회사가 영구히 존속·발전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회사는 이상과 같은 경영철학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담아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SKC주식회사 지배구조헌장"을 선포한다.

제 1 편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제 1 장 이사회 의 역할과 책임

제 1 조 (목표)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궁극적인 경영 목적이 구성원과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존속·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의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의 사회적 가치 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신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 (책임)

- ① 이사회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목표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 ② 이사회는 경영자원 및 자본의 배분 등을 결정함에 있어 ESG 경영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회사의 목적 및 가치, 경영전략, 정책, 관행 등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조 (권한과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목표와 전략의 검토
 - 2.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처분 및 보증/차입
 - 3.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3. 대표이사의 임면
 - 4.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 검토
 - 5. ESG 정책 개선을 위한 심의
 - 6. 기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외적 신뢰 관계와 관계되는 의사결정
- ③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 ① 이사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감독하여야 한다.
- ② 합병 및 분할, 멤버사 간 자본거래 등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체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공정성의 판단 근거를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조 (경영권 방어행위)

- ① 이사회는 기업인수 시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주주 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리스크 관리)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ESG 리스크를 포함한 비재무적·재무적 리스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될 자를 발굴·육성하고,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사임, 기타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8 조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실시된 평가 결과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 9 조 (멤버사와의 관계)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목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멤버사들과 상호 공유·협력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가 SK그룹 멤버사들과 공유·협력할 것을 결정한 경우 회사는 SK그룹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사회는 이와 동시에 회사를 포함한 SK그룹의 생존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회사 등과의 관계)

회사는 자회사 또는/및 그 산하 회사들의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선진 기업 지배구조 구축과 실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사의 역할과 책임

제 11 조 (이사의 역할)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회사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의 구성

제 13 조 (적정 이사회 규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4 조 (적정 사외이사 수)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이어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에 적합한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 다양성)

- ①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식·경험·능력·성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사 선임)

- ① 회사는 이사 후보의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 ③ 이사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 4 장 사외이사

제 18 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 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스스로도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 19 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공시)

- ①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취임한 이후 제1항의 확인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외이사는 즉시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과도한 겸직 및 경업 금지)

- ①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사외이사는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은 회사의 영위 사업과 연관된 경제적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에 속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직 등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직무수행)

-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 의사결정 사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장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등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회사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고 회사 경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정확

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외이사가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목표나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의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23 조 (외부 전문가의 지원 제공)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부담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4 조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 ① 회사는 이사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하고,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③ 신규 선임 이사는 선임 직후 시행되는 직무 및 지배구조에 관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사외이사 협의체)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이사회 규정 등 하위 규정에 의한다.

제 26 조 (선임 사외이사)

- ①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회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할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를 두며,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②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2.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3.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 또는 위원회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업무

제 27 조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소통)

- ① 회사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경영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과 이사회 의장(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본 헌장 제26조 제1항의 선임사외이사를 본 항에 한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본다)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회의 연간 일정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 의장 및 사외이사에 게 고지하는 등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의 운영

제 28 조 (정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회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연간 정기이사회 일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모든 이사에게 동등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일부 이사가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통신수단(음성 또는 화상 및 음성)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보관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둔다.
- ⑤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제 30 조 (이사회 의장의 역할)

- ① 이사회 의장은 회사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와 이사, 이사와 경영진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 이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회사에 제안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3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한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및 회사의 비재무적 리스크(Compliance 등)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제 34 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 35 조 (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역할)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유임 여부를 검토하며,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 36 조 (ESG 위원회의 역할)

ESG위원회는 회사의 환경(Environment)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회사의 지배 구조 (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제 37 조 (내부거래위원회의 역할)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내부거래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제 38 조 (미래전략위원회의 역할)

미래전략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른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 기구로서,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및 투자 자원 등에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사전 검토·심의 한다.

제 2 편 주주

제 1 장 주주의 권리

제 39 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0 조 (주주권 보호)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41 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주주총회

제 42 조 (주제 및 안건)

-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ESG 경영 등 다양한 주제가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 결의 전에 주주에게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중복되거나 타당성 없는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3 조 (일시·장소 등)

- ① 회사는 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편 감사

제 1 장 내부감사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①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의 원만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 이상으로 하되, 동시에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로서의 보수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③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위원 중 최소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45 조 (감사위원회 회의의 운영)

- ① 분기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관련 외부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 46 조 (정보접근권 등)

- ① 감사위원회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과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직원, 외부감사인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전문가로부터 조력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 장 외부감사

제 47 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인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편 이해관계자

제 48 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 ① 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또는 우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ESG 경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주주소통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③ 주주소통위원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알게 된 의견을 이사회에 공유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9 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회사는 근로자와의 협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50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②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1 조 (정보공개)

- ① 회사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단, 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 ⑥ 회사의 대표이사과 재무담당책임자(CFO)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제 52 조 (정보공개접근성)

- ① 회사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기업설명회 자료 등 정보공개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공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 53 조 (공시책임자 지정 등)

- ①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는 공시책임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3년 6월 20일에 전면 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